

#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중화 교통위원장님!  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강동구 제5선거구,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.  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 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 
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 
특별한 계획적 변경 요소가 없음에도  
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

[별표]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

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 
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」 부지면적 기준을  
“5만<sup>m</sup><sup>2</sup> 이상” 에서 상위법령 수준인 “10만<sup>m</sup><sup>2</sup> 이상” 으로 완화하여  
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 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